

역북 서히스타힐스 프라임시티 입주자모집공고(조합원 취소분)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335-1254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7.16.(목)	2026.07.27.(월)	2026.07.28.(화)	2026.08.03.(월)	2026.08.04.(화)~ 2026.08.06.(목)	2026.08.18.(화)~ 2026.08.20.(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역북프라임시티.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16.(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7.27.(월)	2026.07.28.(화)	2026.08.03.(월)	2026.08.04.(화)~ 2026.08.06.(목)	2026.08.18.(화)~ 2026.08.20.(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역북 서희스타힐스프라임시티 조합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170번길 17-5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조합사무실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8.03.)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18070 (2026.07.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9-2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주차장 3개층), 지상29층, 주 8개동, 총 912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3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6000327	01	059.9987B	59B	59.9987	22.6764	82.6751	44.3481	127.0232	35.0941	1	1
	02	074.9988A	74A	74.9988	26.2000	101.1988	55.4354	156.6342	43.8679	2	2
	03	084.9947A	84A	84.9947	29.1474	114.1421	62.8239	176.9660	49.7146	1	1
	04	084.9956B	84B	84.9956	29.9299	114.9255	62.8245	177.7500	49.7151	1	1
	합 계									5	5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조합사무실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하중벽, 주차장,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지상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고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987B	074.9988A	084.9947A	084.9956B
약식표기	59B	74A	84A	84B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illegible]

74A	103동 3호	1	10층	1	77,217,259	509,782,741	587,000,000	10,000,000	4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100,000
74A	105동 2호	1	10층	1	77,217,259	509,782,741	587,000,000	10,000,000	4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100,000
84A	108동 1호	1	16층	1	87,508,751	558,491,249	646,000,000	10,000,000	5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93,800,000
84B	106동 1호	1	21층	1	87,509,631	567,490,369	655,000,000	10,000,000	5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196,500,000

■ 총 공급세대수 5세대 중 4세대는 이전 계약자의 유상옵션 계약으로 인하여 일부 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상옵션이 설치된 상태로 공급받아야 하며, 유상옵션 대금은 분양대금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 계약자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계약자의 유상옵션 설치 4세대 외 나머지 공급세대는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시스템 에어컨

- 총 공급세대수 5세대 중 4세대는 이전 계약자의 유상옵션 계약으로 인하여 일부 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상옵션이 설치된 상태로 공급받아야 하며, 유상옵션 대금은 분양대금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세대 계약자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전 계약자의 유상옵션 설치 4세대 외 나머지 공급세대 세대는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설치 세대 및 설치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동호수	약식표기	유상옵션 설치 품목	
		시스템에어컨(삼성), 4실	계
103-1003	74A	6,200,000	6,200,000
104-101	59B	6,100,000	6,100,000
105-1002	74A	6,200,000	6,200,000
106-2101	84B	6,300,000	6,300,000
108-1601	84A	옵션 없음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조합사무실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향후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위탁사,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발코니 확장 및 미확장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면적(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제외)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 필지의 합병 및 분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이내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을 기준으로 합니다.(필로티,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합니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3회로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대출 금융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 등이 납부하지만, 입주개시일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역북 지역주택조합이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 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 또는 세대 출입 열쇠 수령일 중 선평래일에 완납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납부일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주첨하여 주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조합사무실로 확인 바랍니다.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인 세대주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이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이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및등·호수/ 예비입주자및예비순번발표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 기타지역 :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	2026.07.27.(월) 09:00~17:30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일시: 2026.08.03.(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톡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2026.07.28.(화) 09:00~17:3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청약신청일 당일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8.03.(월) ~ 2026.08.12.(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8.03.(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9항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투기·청약과열지역 제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가점제 당첨자의 가점 점수에 오류가 있어 점수가 낮아진 경우, 재산정한 점수가 최저가점보다 높다면 당첨자격은 유효하나,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 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 당첨자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일반공급)	2026.08.04.(화) ~ 2026.08.06.(목) (3일간), 10:00~16:00	• ‘용인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 조합사무실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170번길 17-5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는 반드시 지참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서류 공통 유의사항

-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합니다.(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 분	서류유형		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용인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조합사무실에 비치 (※ 6억 초과주택에 한함)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직계비속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의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2005. 06. 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위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계약 체결 전 제출,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일반공급	2026.08.18.(화) ~ 2026.08.20.(목) (10:00~17:00)	당사 조합사무실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170번길 17-5)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1차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인 절대 불가함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본인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제3자)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조합사무실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으로 간주하며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1/2씩 부담)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등

• 계약금납부 방법 :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현장수납 불가)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하며, 부정 당첨자로 관리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허용 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상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기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1/2씩 부담)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함.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계약,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1/2씩 부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각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증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납부 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예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예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649701-01-316056	(주)무궁화신탁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를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기간 이후 기납부액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을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6동 501호 홍길동 : 1060501홍길동)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지정된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조합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의 경우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공급대금의 5%)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체는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1~6회차 중도금)(공급대금의 60%)은 중도금 대출금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계약금 및 잔금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지정된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지정된 납부기일 내에 분양대금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할 시 사업주체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대납했던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연체 안내

- 잔금을 납부기간 경과 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시(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6.09.30.	입주지정일
59B	14,000,000	1,400,000	2,800,000	9,800,000
74A	17,000,000	1,700,000	3,400,000	11,900,000
84A	18,500,000	1,850,000	3,700,000	12,950,000
84B	18,500,000	1,850,000	3,700,000	12,95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649701-01-316056	(주)무궁화신탁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납부 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금을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6동 501호 홍길동 : 1060501홍길동)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6.) 현재 공급되는 세대는 기존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추가 입주자모집 세대로 기존 조합원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된 건이므로 금회 본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분은 반드시 발코니 확장을 계약하는 조건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하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 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 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선통통, 배수관이 일부 노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조합사무실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 확장 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됨.
 -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비 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조합사무실, 분양홈페이지 및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조합사무실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인접 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드레스룸 형태, 선반 개수, 사이즈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하며 계약자의 개별시공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가능함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시스템 에어컨

- 총 공급세대수 5세대 중 4세대는 이전 계약자의 유상옵션 계약으로 인하여 일부 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상옵션이 설치된 상태로 공급받아야 하며, 유상옵션 대금은 분양대금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세대 계약자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전 계약자의 유상옵션 설치 4세대 외 나머지 공급세대 세대는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설치 세대 및 설치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동호수	타입	유상옵션 설치 품목	
		시스템에어컨(삼성) 4실	계
103-1003	74A	6,200,000	6,200,000
104-101	59B	6,100,000	6,100,000
105-1002	74A	6,200,000	6,200,000
106-2101	84B	6,300,000	6,300,000
108-1601	84A	옵션없음	

■ 유상옵션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국민은행	649701-01-316056	(주)무궁화신탁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일반 공통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2007년 0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면적(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제외)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 결과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의 대지면적은 확정 측량 시 증감될 수 있으며, 대지지분의 변동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 이내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단위세대 TYPE일지라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이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공급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샘플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놀이터, 휴게공간,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0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의 마감사항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조합사무실, 홍보 자료 및 사업승인도면(설계변경사항 및 신고사항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에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승인도면(설계변경사항 및 신고사항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근린 공원, 완충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조합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 설계 관련 유의 사항

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 (주유소, 자동차공업사, 세차장, 동양포도원, 산업단지(용인패키징디자인 일반산업단지), , 건설자재 상사, 요양원(노인요양원), 연수원, 특수학교(용인다움학교), 카페(칼리오페 등), 축구교실(풋볼파크), 인도어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소프트테니스장(정구)-궁도 경기장, 혐오시설유무, 도로(성산로, 운곡 교차로, 영동고속도로(반방음터널+방음벽), 신설계획도로, 마을안길 확장포장도로, 보행자 전용도로(통학로) 등), 터널(역북터널), 구거, 하천(경안천,유방천), 저수지(관곡저수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차장, 경관녹지, 완충녹지, 대지 경계부 산책로(등산로), 건물(타운하우스 등), 군부대,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침수피해, 악취,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군부대 비행 장주와 인접하여 다수 항공기가 건설 용지 상공으로 자주 이동하고 부대 활동(차량,장비 이동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추후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통학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차장, 경관녹지, 완충녹지, 대지 경계부 산책로(등산로) 등의 개설 등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및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또한 개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빛, 소음, 분진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조합사무실, 카다로그, 홍보물, CG, 모형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녹지 및 공원, 보행자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통학로), 주차장, 대지 경계부 산책로(등산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청약, 계약전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가. 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초등학생은 용인 솔빛초중통합운영학교 배치 가능합니다.

나. 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중학생은 용인1중학군 내 배치 가능합니다.

다. 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고등학생은 용인 관내 기존학교에 학생배치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영동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 인근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확장공사 착수 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대지 경계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정(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비탈면,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 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물당을 설치할 경우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색채심의, 경관심의 등을 포함)결과 및 법규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 조경식재, 포장 및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상에서 각동으로 진입하는 주동 출입구 위치는, 부대시설 및 필로티 유무, 주동 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단지내 레벨차로 인해, 출입구가 지상에 면해 있는 데크

- 층 (지하층) 으로 계획 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홍보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접근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히스타힐스 포레스트와 인접한 남측 경계부 연결녹지와 관련하여 대지 높이 및 시공방법 등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조합사무실 및 홍보자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민공동시설,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재질,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히통 배수관이 일부 노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와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급배기시설 (D/A) 및 재활용분리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조경 시설물 측구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의 침해와 소음, 진동, 분진, 냄새(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재료 고유의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현관 디딤판, 화장대 상판, 욕실 전대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등)은 별도마감 없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등은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승강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및 홍보자료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 도로 및 인접지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료,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위세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외 레벨차에 의한 구간은 세대별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대지 경계부 산책로(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외부계단이 단지 내에 설치되며, 소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내부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은 침실, 주방, 팬트리, 알파룸 등의 벽체에 노출하여 시공되며, 위치 및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비상차량 동선, 주변 도로 및 광장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공간, 옥외시설물, 문주, 광장, 주차장진출입구, 차량 차단기, 지상주차장, 외부계단, 맘스테이션, 어린이 승하차 구역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승강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각종 저층세대는 근린생활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패널,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규모,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경로당, 작은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다목적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맘스테이션,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로자휴게실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 재료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기계환기 방식으로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일부 도어가 손잡이로 인해 90도 개방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비확장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근 재활용분리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일부동 저층세대는 일조확보율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세대의 발코니1 일부(실외기실 내)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대피공간을 대신하며, 이는 피난의 용도로 구성된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을 할 수 없음. 또한,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로 상하부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향식 피난구 적용시, 최하층(1층) 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는 설치 제외)
- 세대 실외기실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 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음
- 세대 실외기실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바닥난방(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적용)이 시공됨.
- 세대 내 실외기실의 그릴은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인근에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세대 내 발코니에 수전과 선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함.
- 현관방화문은 도어클로저 외에 별도의 시설물 (말발굽 등)이 설치되지 않음.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에 거치식 손 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됨.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음.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계단실 또는 승강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승강기 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해충, 악취, 프라이버시 피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상부에 조경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 소음, 진동, 조망, 악취, 분진,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지상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조합사무실, 사업승인 도서 및 홍보자료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 또한, 욕실 출입시 신발 종류에 따라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확장세대와 비확장 세대가 좌·우·상·하에 인접하는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가 일부 돌출 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주동 및 부대시설 외벽 마감은 디자인 개선,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재료, 컬러, 형태, 재질 등이 변경 될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동일 유형의 단위세대 중 축세대와 중간세대는 주동의 평면 조합에 따라, '발코니의 길이' 혹은 '창호의 위치'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준공시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 보행자, 비상차량 동선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지하에 제연휀룸 및 통신실(점검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입주민 보행자 동선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환기구(DA) 설치에 의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와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영구저류조,우수조가 계획되어 있어 인근세대는 소음, 냄새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거 공용 부분인 전실 및 홀 등은 입주자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 및 필로티 내에 제연 설비를 위한 DA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인근 및 필로티 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운영됨.
- 본 아파트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교육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및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와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령 및 관할 관청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용인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및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까지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자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자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및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용인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단지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3항 제3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예정임.

- 본 아파트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법령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용인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용인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지하2층2.3m, 지하3층2.7m, 지하4층2.3~2.7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에 적합하게 설치됨. (향후 출입구 높이와 관련하여서는 시공상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내 트랜치가 시공될 경우,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됨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일부 동의 경우 주차대수가 충분하지 않아 인접동 지하 주차장 이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이용 동선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옥외 안테나가 102동,104동,105동,108동 옥상에 설치 되며 전자파, 조망 등의 환경영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중계장치가 102동,104동,105동,108동 옥상 및 102동,105동 지하3층, 106동 지하2,3층 PIT에 설치 되어 전자파 등의 환경영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부출입구는 지하4층 주차장으로 진입 할 수 있으며, 외부계단,승강기를 통해, 지상으로 이동 가능함.
- 단지 주출입구는 마성IC방향 진출입만 가능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3개층으로 구성되며, 행정 표기상 레벨에 따라 지하2층,지하3층,지하4층으로 표현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는 2개소(지하3층 1개소, 지하4층 1개소)입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장구획별로 층수가 상이하여, 동 배치 위치에 따라 동별로 지하주차장에 직접 연결되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층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바람.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각 동별 지하주차장 내 설치되며, 개소 및 설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용검사 이후, 단지 내 조경시설물,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조명, 공용조명, 보안등, 수목관리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홍보자료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홈페이지, 홍보자료 ,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홍보자료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본 아파트는 향후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입주 후 피해는 용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구분	공지내용
101동	• 북측에 산책로, 외부계단, 지역정압기, 근린생활시설, 지상 주차장, 단지 주출입구(문주)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측에 산책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환기구(DA), 재활용 분리 보관소, 폐기물보관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차량 통행로(경사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배기, 진동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영구저류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에 자전거보관소,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북측에 도로(15m), 소공원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북서측에 주차장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동측에 인접하여, 타운하우스, 도로, 돌봉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서측에 어린이공원, 주차장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 북동측에 재활용 분리 보관소,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 주민쉼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해충,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어린이 승하차구역, 맘스테이션, 외부 계단-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에 폐기물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진동,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동측에 인접하여, 타운하우스, 도로, 돌봉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북서측에 어린이공원, 주차장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 북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어린이 승하차구역, 외부 계단-승강기, 재활용 분리 보관소, 폐기물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배기, 해충,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환기구(DA),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배기, 해충,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측에 주민쉼터, 주민운동시설, 재활용분리 보관소,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외부 계단-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주민쉼터, 부출입구, 외부 계단-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에 맘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통행로(경사로)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북서측에 어린이공원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남서측에 도로(11M)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 북서측에 주민쉼터,, 부출입구, 외부 계단-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측에 환기구(DA),,, 외부 계단-승강기, 재활용 분리 보관소,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다목적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해충,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주민쉼터,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에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 우수조, 우수펌프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북서측에 도로(11M)에 의해, 빛, 소음,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 북측에 환기구(DA),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외부 계단, 재활용 분리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주민쉼터 외부 계단-승강기, 재활용 분리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측에 화계 숲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외부계단, 외부 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다목적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재활용 분리 보관소,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조경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에 오수탱크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 및 면하여,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다목적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북측에 인접하여, 타운하우스, 도로, 돌봉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동측,남측에 인접하여, 경관녹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 북측에 주민운동시설, 주민쉼터, 재활용 분리 보관소, 부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환기구(DA), 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다목적실),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부대복리시설(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조경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화계조경, 외부 계단(등산로 이용), 외부 계단·승강기, 보행자 전용도로(통학로)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재활용 분리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차량 통행로(경사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배기, 진동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에 맘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 및 면하여, 펌프실, 저수조, 소화수조, 발전기실, 전기실, 차량 경사로(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남서측에 인접하여, 카페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빛, 소음,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 북동측에 화계 숲 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외부계단, 외부 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다목적실), 조경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측에 주민쉼터,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부대복리시설(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재활용 분리 보관소, 주민운동시설, 외부계단,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화계조경, 외부 계단(등산로 이용), 외부 계단·승강기, 보행자 전용도로(통학로),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 및 면하여,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다목적실), 조경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동측에 인접하여, 경관녹지, 돌봉산 및 등산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 북동측에 부대복리시설(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화계조경, 외부 계단(등산로 이용), 외부 계단·승강기, 환기구(DA)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측에 보행자 전용도로(통학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환기구(DA)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주민운동시설, 차량 경사로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재활용 분리 보관소, 차량 통행로(경사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진동,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남측에 인접하여, 등산로 (계획 예정)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빛, 소음,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남서측에 인접하여, 카페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빛, 소음, 조망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2~3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7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내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다목적실, 맘스태이션, 어린이놀이터 등), 경비실, 근로자휴게실,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등

■ **기타**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등급
내진능력	Ⅶ-0.218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Ⅶ)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	비 고
건축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3,639,058,000	-
전기	(주)태양이엔지	₩870,174,497	-
소방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811,738,500	-
통신	(주)지케이엔지	₩261,800,000	-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항 목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가. 의무사항 이행여부 검토		
① 고기밀 창호	적용	거실의 외기직접면한 창호의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이상
② 고효율기자재	적용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③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전동 차단 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1개소)설치
④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 (1EA)
⑤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⑥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화장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⑦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 내 각 실 온도조절장치 설치
⑧ 절수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탁용 및 청소용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설계변경,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설계변경,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	자금관리자
상 호	역북지역주택조합	(주)서희건설	(주)무궁화신탁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170번길 17-5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3층 304호 (망월동, 메디피아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등록번호	505-82-81620	110111-0335912	110111-2867418
전화번호	031-335-1254	02-3416-6700	02-3456-0000
■ 역북 서히스타힐스 프라임시티 홈페이지 : http://www.역북프라임시티.com ■ 조합사무실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170번길 17-5 ■ 상담전화 : 031-335-125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조합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